

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: 2022.11.18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58 조 제 1 항에 의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,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1. 보수

- 가. 운용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나. 매입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매입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다. 매각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매각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라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 수령가능)
- 마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바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- 사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

대신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

나. 환매수수료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모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/투자자문자산 간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은 금지된다.
- ③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
보수 및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제6조(총비용비율 한도의 관리)

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비용발생을 지양하기 위하여 총비용비율한도(TER: Total Expense Ratio)를 관리하며 항상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한다.

제7조(수수료의 설명의무)

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의 고지)

회사는 투자광고, 투자권유를 하거나 및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시)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